

# 건강한 중구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서



중구보건소 · 강북삼성병원 · (주)헬스맥스

# 건강한 중구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서

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(이하 ‘중구’이라 함)와 강북삼성병원(이하 ‘병원’이라함), (주)헬스맥스는 건강한 중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중구마을 만들기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역할】

중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한 중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, 병원은 중구민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환경 조성, 건강교육 실시, 건강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업무를 지원하며, (주)헬스맥스는 U헬스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한다.

## 제3조 【사업내용】

① 각 기관이 협력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가. 건강환경

- 보건지소 · U건강센터 내 U헬스시스템 장비 지원 및 구축, 걷기행사 지원, 취약계층 건강검진, 기타 사회공헌활동

나. 건강교육

- 헬스리더 양성, 응급처치, 영양, 운동 강좌

다. 건강시스템

- 스마트헬스 시스템(플랫폼, 어플, 프로그램 등) 개발 · 적용, U헬스 시스템 개선 · 유지 관리

② 사업내용의 종류와 범위, 실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.

#### 제4조 【신의성실의무】

중구와 병원, (주)헬스맥스는 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, 관련사항을 협의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#### 제5조 【협약기간】

본 협약서의 협약기간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다자간에 특별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#### 제6조 【협약해지】

본 협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서면 통지 등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【비밀유지】

① 중구와 병원, (주)헬스맥스는 업무협약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 업무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한다.

② 중구와 병원, (주)헬스맥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.

#### 제8조 【효력발생】

본 협약서의 효력은 ‘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’, ‘강북삼성병원’, ‘(주)헬스맥스’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3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월 26일



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 
보건소장 **홍혜정**



강북삼성병원  
행정부원장 **강상권**



(주)헬스맥스  
대표이사 **호**